

	<b>명예퇴직및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규정</b>	규정번호	3-3-6
		제정일자	2007.02.21.
		개정일자	2020.06.01.
		개정차수	2차
		소관부서	행정지원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 교직원의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명예퇴직신청자격은 퇴직예정일 현재 대학 정규 교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교원은 만60세, 직원은 만52세 된 자로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제3조(명예퇴직의 제한) ① 매년 명예퇴직 신청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직원에게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
3. 기타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교직원 수급계획 및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의 허가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의2(근속기간의 산정) ① 근속기간은 이사장 발령에 의한 연속된 근무기간을 말한다.

② 근속기간의 산정은 각 호와 같다.

1. 근속연수의 계산은 대학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한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
2.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① 명예퇴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명예퇴직 신청) ①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별지1]을 매 학기초 60일 이내 소속부서장(교원은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입학처장 또는 행정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예정일은 매학기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강상의 사유로 계속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심의위원회) ① 명예퇴직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원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의 경우 직원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심사·결정)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명예퇴직대상자를 선정한다.

1. 공상 또는 상병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교직원 (진단서 첨부)
2. 장기근속 교직원
3. 상위 직급 교직원
4. 기타

② 총장은 명예퇴직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결정통지) 명예퇴직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지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신청)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허가 결정통지를 받은 교직원은 소정의 명예퇴직수당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행정지원처에 제출한다.

제10조(수당지급시기)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11조(기타) 명예퇴직자의 결정과 심사방법, 수당지급절차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 년 2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